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293 제출연월일: 2024. 7.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9조의2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 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혀 행 개 정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③ ----- 제2항(제9조의2 단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 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제4항에서 같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신 설> 공탁자는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 탁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통고한 경우
-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